

1 지방자치권의 제도적 보장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성립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 본다.
- ② 지방의 사무를 주민에 의해 처리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를 강조한다.
- ③ 지방자치를 헌법으로 보장함으로써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고 본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천부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자연법적인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본다.

해설

①②④는 고유권설에 대한 내용.

③ 제도적 보장설은 전래권설처럼 자치권이 국가의 통치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헌법에 지방자치 규정을 두어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된다는 주장. 지방자치를 헌법에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존폐는 오직 헌법 개정으로만 가능하고, 입법에 의해 변경할 수 없게 함. 지방자치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지만, 입법자가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지방자치 보장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에 대하여는 헌법적 보호가 부여됨(지방자치행정을 법률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

자치권의 본질에 대한 학설

고유권설 (지방권설, 독립설, 확인설)	• 주민자치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의 고유한 정치적 지배권을 향유. • 프랑스 지방권사상(프랑스혁명 시기 툴레[Thouret]의 주장)을 기초로 확립. • 자연법 사상과 역사적 연유관에 기반. - 자연법사상 : 사람이 천부의 기본권을 가진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도 고유한 지방권을 가지므로 국가권력으로 이 권리를 침범할 수 없음. - 역사적 유래관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성립 이전부터 형성되었으며 자치권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리를 인수한 것임.
전래권설 (국권설, 수탁설)	• 단체자치와 관련. 자치권은 국권으로부터 유래한 것(19C 후반 독일 공법학자들의 주장). 근대의 지방자치는 민족통일국가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법률의 창조물이며 고유사무가 설정되어도 국가 법률에 의해 수탁된 결과이고, 사무집행시 국가의 강력한 감독을 받음. 단, 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단체로서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권리로써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임.
제도적 보장설	• 전래권설처럼 자치권이 국가의 통치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헌법에 지방자치 규정을 두어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된다는 주장(개별적인 지방정부의 존립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님). • 독일의 칼 슈미트(Carl Schmitt)에 의해 확립, 독일 바이마르 헌법을 중심으로 설명되며 오늘날의 다수설. • 지방자치를 헌법에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존폐는 오직 헌법 개정으로만 가능하고, 입법에 의해 변경할 수 없게 함. 지방자치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지만, 입법자가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지방자치 보장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에 대하여는 헌법적 보호가 부여됨(지방자치행정을 법률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 • 고유권설과 전래권설적 이해의 대립은 입헌주의가 확립되고 지방자치가 헌법에 규정되어 보장됨에 따라, 헌법상의 제도로써 보장되는 것이라고 설명되게 됨.

답 ③

2 지방자치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역이기주의 현상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 ② 지방 토호 세력이 지역의 이익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
- ③ 행정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④ 새로운 제도나 정책에 대한 지역적 실험을 어렵게 한다.

해설

④ (×) 지방자치는 한 자치단체에서 성공한 정책을 타 자치단체나 국가 정책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정책의 지역적 실험을 통해 새로운 제도나 정책의 전국적 규모의 실시 때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부담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

답 ④

지방자치의 효용(가치·필요성)과 한계(폐해)

1. 지방자치의 효용(가치·필요성)

정치적 가치 (민주적 측면)	① 민주주의의 훈련장, 민주주의의 전제 및 실천원리, 독재 및 전제정치에 대한 민주주의의 방파제 ② 지역 내 사무의 주민참여를 통한 자주적 결정을 통해 주민의 정치적 욕구 충족, 민주주의의 생활화 ③ 정치적 혼란에 대한 완충장치 : 중앙 정국의 불안정, 정권교체, 정세변화나 재정·행정상 혼란이 지방에까지 파급되는 것을 최소화 ④ 정치적 하위체계의 분화와 자율성 증대 ⑤ 평화적인 사회개혁 가능성(권력분산을 통해 쿠데타·혁명의 방지와 점진적·평화적 사회개혁 도모)
행정적 기술적 가치 (수단적· 능률적· 측면)	① 지역실정에 적응하는 행정(각 지역의 개별성·특수성에 부응) ② 지역 안의 종합행정 확보(지역사회에 필요한 사무를 일체적·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중앙에서 결정한 정책의 지방적 실시에 있어서 유기적인 종합화) ③ 정책의 지역적 실험(한 자치단체에서 성공한 정책을 타 자치단체나 국가 정책에 적용. 전국적 규모의 실시 때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부담과 시행착오를 최소화)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기능 분담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증진

	⑤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능력발전 ⑥ 지역주민의 생산적인 관여 유도(참여를 통한 민중통제와 그에 따른 행정능률 및 대응성 제고, 시민공동생산) ⑦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유발을 통한 효율성 향상
사회적 효용	① 경쟁성과 창의성의 제고 : 지방분권을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므로 지방자치제는 지방정부간 경쟁을 유도하며 지방정부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하게 함. ② 지역주민의 자치의식수준 제고, 주체의식·책임의식 함양(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함) ③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를 촉진시키고, 지역개발사업에의 적극적 협조 유도 ④ 지역사회 계층 간 갈등해소에 적극적 노력 ⑤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실질적인 경제·사회개발의 촉진-지역주민 이익 도모, 당해 지역의 개발에 중점, 지방공기업 육성·관민합작회사 설립·지방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보노력) ⑥ 인적·물적 자원의 집중화 방지(중앙정부에 의한 독점·통제나, 대도시 편중을 개선), 지방문화의 육성·발전
경제적 효용	① 자원배분의 효율성, 후생의 극대화, 소비자 선호의 구현(주민의 선호에 부응하는 공공서비스 제공) ② 지역 고유산업과 문화 발전 : 각 자치단체는 취업기회를 넓혀 경제기반을 강화하고 문화적 고유성 함양

2. 지방자치의 한계·폐해

정치적 폐해	① 부분에 집착하여 전체를 경시 : 해당 지역의 입장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경향이 강해 국가 전체의 이익을 경시할 수 있음. ② 위기대응능력 약화 :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전국적인 인적·물적 자원의 신속한 동원능력을 발휘하는 데 중앙집권체제가 더 효율적임. ③ 다수 당사자 간 토론·타협을 통한 갈등 조정·해결 곤란
행정적 폐해	① 행정의 정치화(지방선거에의 정당참여 허용시 중앙정치의 하수인화, 지방행정의 자주성·전문성 약화) ② 낭비와 비효율(토론·협상·타협의 과정, 부분주체 간 불필요한 경쟁과 극단적 마찰. 주민의 적극적 참여는 민주화에 긍정적 면도 있지만, 신속한 정책결정을 요하는 업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분야에는 부적합하여 행정능률 저하) ③ 외부효과와 사업 기피 : 외부효과로 인해 지방정부가 투자를 기피하고 문제를 방치하며 책임을 전가하려 함 ④ 행정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 : 각 지방정부의 재정력의 차이로 인해 지방공공서비스의 수준이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게 됨.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대립·격화, 자치단체 간 과열경쟁심리 자극
사회적 폐해	① 지역주의와 배타성 : 지나치게 지방색을 부각시키고 배타적 지역감정을 고취시키면 지역 간 갈등 유발 ②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와 지방정부간 대립
경제적 폐해	① 규모의 경제 달성 곤란(예) 쓰레기소각장 설치의 개별 자치단체별 설치보다는 대규모의 통합적 설치가 비용절감) ② 재분배정책의 실패 : 지방정부는 납세능력이 큰 주민들이 선호하는 정책에 재정활동을 집중시키므로 경제안정 및 성장기능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소득 재분배에는 소홀하게 됨(피터슨의 도시한계론, 복지의 자석효과) ③ 분배·경제정책의 실패(지방정부만의 독자적 분배정책, 경제안정화정책의 실패 가능성) ④ 지역개발사업의 남발, 부동산 투기 및 지가 상승

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상 주민조례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학생인권에 대한 사항
- ② 방사능 안전급식에 대한 사항
- ③ 원자력발전소 설치 반대에 대한 사항
- ④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사항

해설

- ③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됨(공공시설의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은 가능)

•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답 ③

4 2022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 ②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 ③ 주민의 의무 및 주민소환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해설

- ① (○) 기관대립형이 원칙, 다른 기관구성 방식도 허용(주민투표와 법률 제정 필요).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 ② (○)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 ③ (×) 주민의 의무나 주민소환 규정은 개정되지 않았다. 주민소환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 ④ (○)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답 ③

2022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2022.1.13. 시행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비교 정리

내용	구법	개정	비고
특별자치시에 기초단체를 두지 않도록 함	- 지방자치법 : 특별자치시에 기초 단체를 두도록 함 - 세종특별자치법 : 세종특별자치시에 군·자치구를 두지 않음	특별자치시에 기초자치단체(군·자치구)를 두도록 한 규정 삭제.	세종특별자치법 규정 수종
자치단체기관구성의 자율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구성방식을 기관대립형으로 한정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구성방식 (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법 포함)을 주민투표를 거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기관통합형도 가능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신설	사무처리의 기본원칙만 규정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규정은 없었음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사무의 중복배분 금지 원칙(경합피지) ② (소극적) 보충성 원칙(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국가) ③ 포괄적 배분 원칙(자기 책임 하에 종합처리)	
자치단체의 사무예시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 삭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	가족관계등록사무 를 자치단체의 사무 예시에서 삭제	가족관계등록사무는 기관위임사무
주민조례개폐청구에 관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도록 함	청구절차, 요건 등 세부적으로 규정	법적 근거만 규정하고 청구권자, 청구대상, 청구요건, 절차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제출	규정 없음	주민은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을 자치단체장에게 제출 가능 ⇨ 자치단체장은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 통보	
주민감사 청구제도 개선	감사청구연령	19세 이상 주민	18세 이상 주민
	연대서명인 수 축소	다음 수 이내 조례로 정한 수 이상 • 시·도 : 500명 • 인구 50만 이상 시 : 300명 • 시·군·자치구 : 200명	다음 수 이내 조례로 정한 수 이상 • 시·도 : 300명 • 인구 50만 이상 시 : 200명 • 시·군·자치구 : 150명
	감사청구시효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부터 3년
	공표·열람	규정 없음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내용을 5일 이내 공표, 공표일부터 10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주민에 대한 정보 공개 강화	규정 없음	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자치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	
지방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	규정 없음	지방의원 정수의 1/2범위에서 조례로 지방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 명확화	규정 없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 받아 기관·단체 등으로 겸직금지 대상기관 명확화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행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사무처·사무국·사무과의 사무직원 에 대한 인사권 행사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폐지분합으로 지방자치단체 신설시 최초 임시회의 소집권자	규정 없음	자치단체 폐지분합시 신설 자치단체 의회의 최초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해당 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 소집	
중앙과 지방 협력 강화	규정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도모,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관련은 중요 정책 심의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두며 그 구성·운영은 법률로 정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주무부장관의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시정명령 및 직무이행명령	규정 없음	주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의 명령·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침에도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안 하면, 시·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안 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 명령·처분의 취소·정지 가능(단, 자치사무는 법령 위반의 경우에만) 주무부장관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 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직무이행명령을 안하면 시·도지사에게 직무이행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시·도지사가 직무이행명령을 안 하면 주무부장관이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직접 직무이행명령 가능	주무부장관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통 제권 확대
주무부장관의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의회 의결 재의요구 지시	규정 없음	주무부장관은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도 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직접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특례시(인구100만) 등 대도시 특례의 다양화	대도시에 대한 특례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특례만 규정.	대도시 등 특례(특례는 법률로 정함) ① 기존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②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특례시) 특례 ③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한 특례	
특별지방자치단체 세부 규정	특별자치단체를 규정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없었음.	특별자치단체의 성격과 설치절차, 규약, 기관구성 등 구체적 규정 신설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별도로 규정

* 2023.6.7. 지방자치법 개정 : 특별자치도가 강원 및 전북특별자치도까지 포함하여 3개가 되었지만 자치계층이 제주특별자치도는 1층제, 강원 및 전북특별자치도 (2024.1.)는 2층제로 운영됨에 따라 법 개정. 특별자치도의 경우 관할구역 내에 시·군을 둘 수 있지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에서 시·군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 따라서 강원 및 전북특별자치도는 시·군을 둬.

5 스톤(C. Stone)의 레짐이론(Regim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Atlanta)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 간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방정치 권력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 레짐은 의도적인 노력보다는 모든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참여자들이 가치와 신념체계까지 공유한다.
 ㉢ 환경문제와 지역 내 삶의 질에 큰 관심을 두는 레짐의 유형은 중산층 진보레짐(middle class progressive regime)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해설

- ㉠ (○) 스톤(C. Stone)은 Atlanta시의 도시경제와 정치 간 상호의존성 및 시기별 의존성의 성격 변화를 분석하고 Atlanta시는 기업엘리트, 선출직 정치인, 언론사 간의 동태적·목표지향적 연합에 의한 통치체제를 구축해 왔으며 실용성과 시민협력(civic cooperation)이 강조되었다고 주장.
 ㉡ (×) 레짐은 지방정부와 민간의 주요 주체 간 상호의존성과 협력관계가 **의도적으로 형성된 것**.
 ㉢ (○) **스톤(C. Stone)의 레짐 유형(1993)**

- ㉠ **현상유지레짐** : 친밀성이 높은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유형. 근본적인 변화 노력 없이 기존에 실시하던 정책 이외의 새로운 정책을 추구하려 하지 않으며 기본적 행정서비스 제공이 주된 업무. 관련행위 주체 간 친밀성이 높으므로 갈등이나 마찰이 적은 편이며 생존능력이 강함.
 ㉡ **개발레짐** : 지역 성장을 추구하고 쇠락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도시재개발, 공공시설의 설치,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보조금 제공 등의 수단으로 지역개발을 적극 추진. 사적 소유권을 가진 사업가 집단의 자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형성되는 경우가 많음. 도시개발의 편익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관련행위 주체 간 갈등이 심하며 생존능력이 비교적 강한 편임.
 ㉢ **중산계층 진보레짐** : 중산층 주도로 개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환경보호, 사적지 보호, 쾌적한 주택환경 조성, 도시설계의 고급화 유지, 소수집단 보호, 개발부담금제 실시 등을 추구.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정부-기업관계는 대체로 자발적이지 않거나 강제적이며 정부의 강력한 기업규제가 실시되어 개발 부담금 제도와 같은 수단이 도입되고,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강조되며 생존능력은 보통수준.
 ㉣ **하층 기회 확장 레짐** :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경제욕구 충족과 이익 확대를 지향하는 유형으로 직업교육 같은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주택소유 기회배분, 소규모 사업 실시를 수단으로 삼음. 대중동원이 가장 큰 통치과제로 대두됨. 생존능력은 약함.

구분	현상유지 레짐	개발 레짐	중산계층 진보 레짐	하층기회 확장 레짐
추구 가치	현상 유지	지역 개발·성장·발전	자연환경 보호, 평등	저소득층 보호, 직업교육
구성원간 관계	친밀성 높은 소규모 지역사회, 갈등 없음	갈등 심함	시민 참여·감시 강조	대중동원이 과제
생존능력	강함	비교적 강함	보통	약함

답 ②

6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은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경계를 변경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③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변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 조례로 정한다.

해설

- ① (○)

제10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③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시에 있는 면 중 1개 면

- ② (×) 관할 구역의 경계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구 분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자치구가 아닌 구	행정시	리
명칭·구역 변경	• 주민투표를 거치거나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의결을 얻어) 법률로 정함.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보고	도의 조례로 정하고 특별 자치도지사가 행안부장관에게 보고	해당 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함(구역은 자연촌락 기 준)
폐지분합 (폐지·설치, 나누거나 합침)	• 단, 관할구역 경계변경이나 한자 명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한자명칭 변경은 먼저 주민투표나 지방의회 의견청취 필요 -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주민투표나 지방의회 의견청취 필요 없음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행정시의 읍·면·동 폐지분합은 조례 로 정하고 행안부장관에게 보고		
사무소 소재지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함(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필요). ☑ 행정안전부장관·시·도지사와 협의 절차는 불필요.			.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

① 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장관에게 경계변경 필요 지역 등을 명시해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 신청 가능.

② 행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 간 경계변경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관계 자치단체장에게 요청.

③ 행안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 못한 경우나 관계 자치단체가 협의기간 이내에 경계변경 여부 및 대상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행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계변경에 대해 조정할 수 있음.

③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 :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

•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 사무소 소재지 변경 :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는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필요

•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답 ①

7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에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가 포함된다.
-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다.
-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도에서 먼저 처리한다.

해설

①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주민등록 관리

② (○)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③ (○)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④ (×)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기초자치단체 우선 원칙)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③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답 ④

8 「지방재정법」상 재정위기단체 또는 긴급재정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직접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하여금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3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하여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설

- ①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를 받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직접 작성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하여금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게 해야 함(지방재정법 제60조의5 제1항)
- ② (×) 재정위기단체 ⇨ 재정주의단체
- ③ (×) 기획재정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④ (×) 30일 ⇨ 60일

답 ①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

재정분석, 재정위험수준 점검

- 자치단체장은 예산·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발부채, 기타 재정상황에 관한 재정보고서를 행안부장관에게 제출 ⇨ 행안부장관은 재정보고서 내용 분석(재정분석), 재정 상황 중 채무 등에 대하여 **재정위험 수준 점검**
- 재정분석 결과 재정 건전성·효율성이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별도 교부 가능

재정진단

실시	㉠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치단체
사유	㉡ 재정위험수준 점검 결과 재정위험수준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자치단체
절차	행안부장관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 거쳐 실시
조치	행안부장관은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이행을 권고 하거나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사항의 지도 가능

재정위기단체·재정주의단체

지정	행안부장관이 재정분석·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위기관리위 심의 거쳐 지정 ㉠ 재정위기단체 :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자치단체 ㉡ 재정주의단체 :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지 않지만 재정 건전성·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자치단체
통제	• 재정위기단체에 대한 통제 ① 재정건전화계획 :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계획 이행상황을 지방의회 및 행안부장관에게 보고(행안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을 권고·지도 가능). ② 지방채 발행 등 제한 :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행안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 지방채 발행, 채무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음. ③ 제재 : 행안부장관은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이행 결과가 현저히 부진하면 교부세 감액이나 재정상 불이익 부여 가능 • 재정주의단체에 대한 통제 : 행안부장관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사항의 지도 가능.

긴급재정관리단체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위기 상황이 닥칠 경우, 주민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정부가 협력해 재정위기를 신속히 해결하는 제도.
지정	<재정위기 상황> 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어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했지만 지정된 때부터 3년이 지난 날 또는 그 이후의 재정위험 수준이 지정시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 ② 소속 공무원 인건비 30일 이상 미지급 ③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 상환60일 이상 불이행 ⇒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행안부 장관이 판단 ⇒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위 사유나 이에 준하는 재정위기 시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 행안부 장관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 가능(지방재정위기관리위 심의 거쳐) * 신청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함.
통제	① 긴급재정관리인 : 행안부 장관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재정관리 업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긴급재정관리인으로 선임하여 파견. ② 긴급재정관리계획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부적절시 긴급재정관리인)은 긴급재정관리계획안(채무 상환 및 감축, 세출구조조정, 수입 증대 등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를 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안 편성시 긴급재정관리 계획에 따라야 함.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획 이행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사항의 권고 가능. ③ 지방채 발행등 제한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 지방채 발행, 채무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음. ④ 제재 : 행안부 장관은 긴급재정관리계획 수립·이행 결과가 현저히 부진하면 교부세 감액이나 재정상의 불이익 부여 가능

9 「지방자치법」상 보조기관과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교육훈련기관과 시험연구기관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부시장과 부지사의 수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보조기관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해설

- ① (○)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내용이며 대통령령(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광역시·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도는 3명)으로 규정.
제123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수 :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수 : 1명으로 한다.
- ③ (○)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 ④ (×) 합의제행정기관은 보조기관이 아니라 소속행정기관임.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상 합의제 행정기관은 제3절 소속행정기관에 규정

지방자치법 상 집행기관

보조기관	① 부단체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각 행정기구(실·본부·국·과), ③ 지방공무원									
소속 행정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 직속기관(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중소기업지도기관, 자치경찰기관 등)									
	<table> <tr> <td>직속기관</td><td>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설치</td></tr> <tr> <td>사업소</td><td>특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설치</td></tr> <tr> <td>출장소</td><td>외진 곳의 주민 편의, 특정지역 개발 촉진에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설치</td></tr> <tr> <td>합의제 행정기관</td><td>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td></tr> <tr> <td>자문기관</td><td>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td></tr> </table>	직속기관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설치	사업소	특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설치	출장소	외진 곳의 주민 편의, 특정지역 개발 촉진에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설치	합의제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자문기관
직속기관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설치									
사업소	특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설치									
출장소	외진 곳의 주민 편의, 특정지역 개발 촉진에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설치									
합의제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자문기관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									
하부행정기관(장)	자치구가 아닌 구(구청장), 읍(읍장), 면[행정면](면장), 동[행정동](동장)									
교육·과학·체육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별도의 기관을 둠									

10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라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 ④ 지방의회가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 ② (×) 헌법재판소에 → 대법원에
①③④ (○)

지방자치법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92조 제4항을 준용한다.

• 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1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지방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1.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2.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유형(지방의회의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종 류	재의요구 사유	요구여부	재의결에 대한 조치
일반 의결	월권, 위법, 공익을 현저히 해(害)하는 경우	임의	재의결 사항이 법령 위반시 자치단체장은 재의결일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및 집행정지신청 가능
감독기관의 지시	위법,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감독기관(주무부장관·광역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지시	필수	재의결 사항이 법령 위반시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결일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및 집행정지신청 가능, 감독기관은 제소지시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신청 가능
조례 제정	요건 없음(이의가 있으면 가능)	임의	명문 규정은 없지만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해당하므로 법령에 위반시 재의결일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가능
경비 의결	㉠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경비가 포함된 의결 ㉡ 필수적 경비 삭감 의결(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할 경비나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 응급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비의 삭감 의결)	임의	

답 ②

11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광역시와 도가 부과할 수 있는 지방세 중 공통인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취득세 ㉡ 재산세 ㉢ 지방소비세 ㉣ 지방소득세 ㉤ 주민세 ㉥ 지방교육세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 특별시·광역시·도가 공통으로 부과할 수 있는 지방세 : 지방소비세, 취득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주체별 지방세의 종류

과세주체	보통세(9개)	목적세(2개)	특별시·광역시·도	자치구
특별시·광역시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주1)} ,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주2)} ,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취득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도	등록면허세	취득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시·군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3)}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치구	등록면허세	×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예산 편성·의결 및 집행
나. 회계·계약 및 재산관리
- 3의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④ (○)

•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답 ①

14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이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 ㉢ 감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 (×) **행정사무조사** : 재적의원 1/3 이상 찬성으로 발의, 본회의 의결(일반의결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로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

지방자치법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 **행정사무감사** : 매년 1회 정기적(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 광역 14일, 기초 9일 범위.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구 분	대 상	시기·요건	대상기관	주 체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 전반	매년 1회 정기적(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 (광역 14일, 기초 9일 범위)	상임위원회 소관의 전체 기관	본회의, 위원회(소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특정 사안 (구체적·한정적)	재적의원 1/3 이상 찬성으로 발의, 본회의 의결로 조사. 실시 시기 제한 없음	특정 사안 관련기관	

답 ④

15 중앙지방협력회의법령 상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가 협력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이행 결과를 협력회의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
- ②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이고 부의장은 시·도지사협의회의 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다.
- ④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①②③ (×) ④ (○)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심의 결과의 활용)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및 이행 결과를 협력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및 운영)

② 협력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된다.

③ 협력회의의 부의장은 국무총리와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시·도지사 협의체의 대표자(시·도지사협의회회장)가 공동으로 된다.

④ (○)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협력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답 ④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목적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 제고
2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함) 심의사항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3	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지방자치법 제18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회의장·광역의회의장 협의체)의 대표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 : 대통령 ③ 부의장(2인 공동) : 국무총리와 시·도지사 협의체 대표자(시·도지사협의회회장) ④ 의장은 협력회의의 소집·주재. ⑤ 부의장은 의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장이 협력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국무총리, 시·도지사협의회회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 ⑥ 협력회의의 구성원은 협력회의에 심의할 안건을 제출할 수 있음. ⑦ 의장은 제출된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하면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 민간전문가를 협력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⑧ 그 외에 협력회의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4	심의 결과의 활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력회의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함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및 이행 결과를 협력회의에 보고해야 함.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①에도 불구하고 심의 결과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와 향후 조치 계획을 협력회의에 보고해야 함
5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협력회의는 심의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6	실무협의회	① 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조정하고 의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⑥항 생략

16 「지방자치법」상 분쟁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②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의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제외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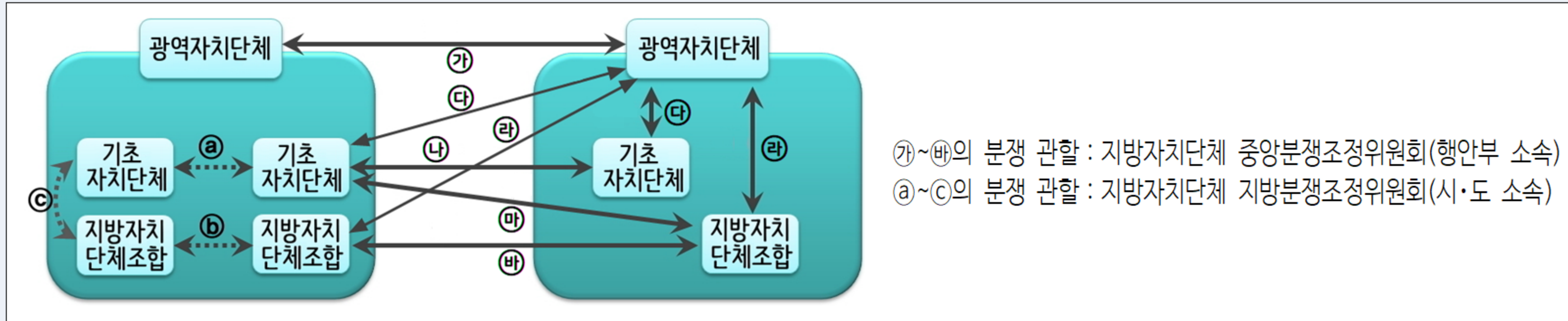
① (○)

•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1. 시·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2.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3.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4.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5.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6.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③ (×)

•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제외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 조정 가능

• 제165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에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답 ③

17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조례 및 의결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③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는 기금의 설치·운용이 포함된다.
- ④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해설

이하 법률 규정은 지방자치법

① (○)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② (○)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③ (○)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 | |
|---|--|
|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 2. 예산의 심의·확정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 3. 결산의 승인 | 8. 법령·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 징수 |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
| 5. 기금의 설치·운용 |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 |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④ (×)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회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답 ④

18 「지방재정법」상 지방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지방채 발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②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조례로 정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승인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해 발행할 수 있다.
- ④ 지방채는 「지방재정법」이 아니더라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발행할 수 있다.

해설

이하 법률 규정은 지방재정법

- ① (×)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이 지방채 발행 가능.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④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함.한다.

• **지방재정법 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①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후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하다.

•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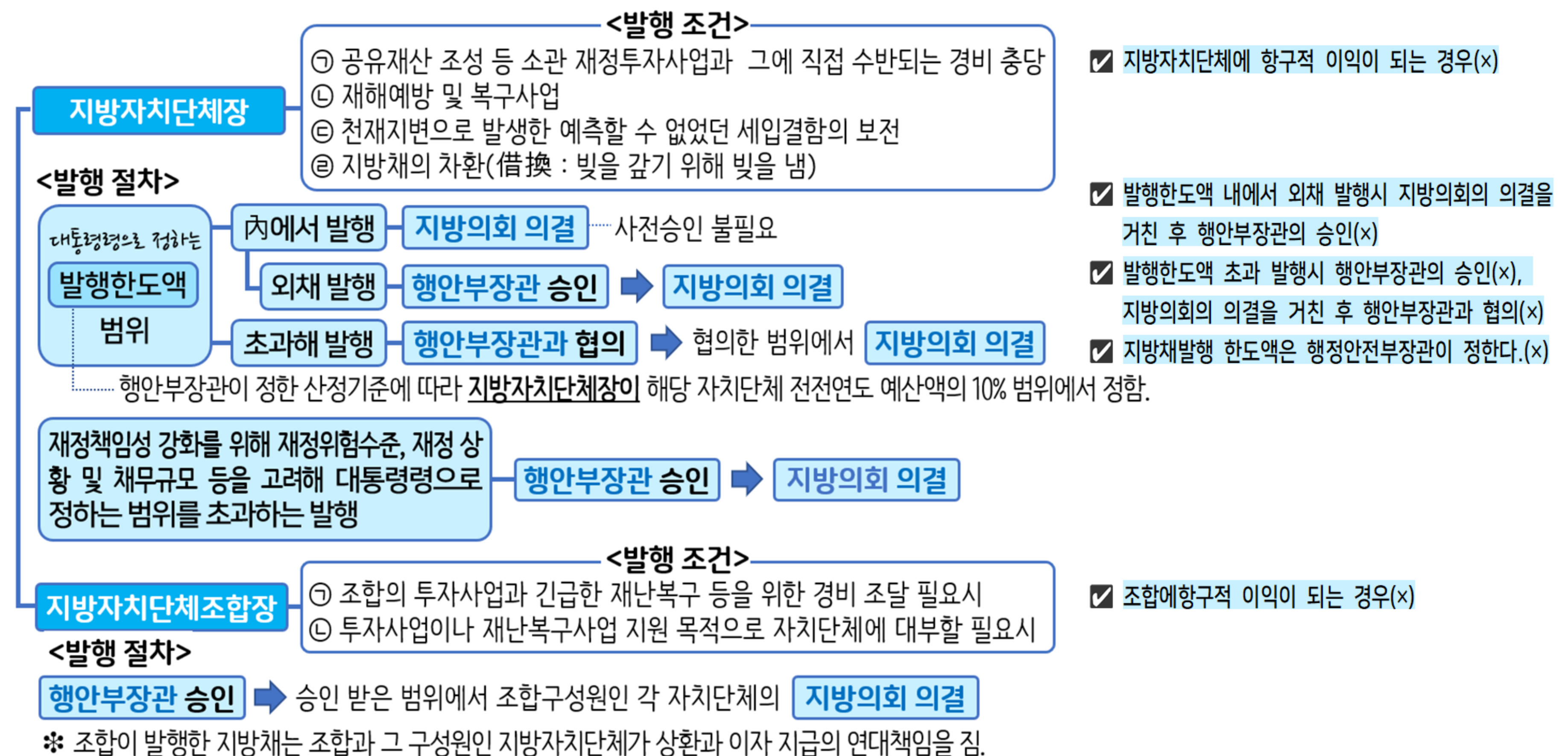
- ④ (○) 지방채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발행할 수 없다. 제시된 법률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발행 근거 법률임.

•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1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답 ④

■ 지방채 발행 절차(지방재정법 제11조)

• 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률(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 발행 가능(지방자치법 139조 ①항).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의회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 가능(행안부장관과 승인이나 협의 불필요).

19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뒤 고시하여 설립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서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해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①③④ (○)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8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99조(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이 변경됨.

- 종전 : 규약을 정해 각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 → 감독기관에 보고
- 개정 : 규약을 정해 각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고시 → 감독기관에 보고

제169조(행정협의회회의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 광역행정방식별 절차

구분	절차	구성·설립·설치등 권고·명령
사무위탁	규약 정함 ⇨ 고시 (감독기관에의 보고 절차는 불필요)	
행정협의회	규약 정함 ⇨ 지방의회에 보고 하고 고시 (지방의회 의결 X) ⇨ •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안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보고 • 시·군·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보고	행안부장관/시·도지사는 협의회 구성을 권고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정함 ⇨ 지방의회 의결 ⇨ • 시·도는 행안부장관 승인 •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 승인	행안부장관(시·도지사 X)은 공익상 필요시 설립·해산·규약변경을 명할 수 있음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정함 ⇨ 지방의회 의결 ⇨ • 행안부장관의 승인	행안부장관은 공익상 필요시 설치·해산·규약변경을 권고 할 수 있음

답 ②

20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 ②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해설

② (×) 주무부장관 ⇨ 시·도지사

■ 국가사무나 시·도 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사무 종류	지도·감독 기관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시·도	주무부장관
	시·군·자치구	1차 시·도지사, 2차 주무부장관
시·군·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	시·도지사	

제185조(국가사무나 시·도 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②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①③④ (○)

- **제18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90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한다.
- **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답 ②